|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1992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 따라 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부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등 7부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조세의 징수관리는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상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조세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한 단위와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법규상 대리공제·대리수취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 원천징수결산납부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전국의 조세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 지방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원에서 정한 조세징수관리범위에 따라 별도로 징수관리를 진행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조세징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또는 협조를 강화하고,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며,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 관련부서와 단위는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고 협조해야한다.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에 대해 어떤 단위와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각급세무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조세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며, 세무기관과 기타 정부관리기관간의 정보공유제도를 수립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관련단위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에 세금납부, 대리공제 및 대리수취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조세법률, 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조세법률, 행정법규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 규율위반행위를 고발,제보할 수 있다.  **제9조** 세무기관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의법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해야 하며,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무직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괴롭혀서도 안된다.    **제10조** 각급세무기관은 반드시 내부규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상급세무기관은 하급세무기관의 세무행정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각급세무기관은 소속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및 청렴자율준칙의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징수, 관리, 조사, 행정재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제12조** 세금징수 및 조세위법사건의 조사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조세위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직원은 그 징수 및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위반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세무기관과 조사담당기관은 반드시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제14조** 본법에서 칭하는 세무기관은 각급세무국, 세무분국과 세무소 및 국무원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를 의미한다.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15조** 기업, 그리고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한다)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신고 당일에 등기처리를 하고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 및 영업허가증 발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제1항규정이외의 납세자의 세무등기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등록업무에 대한 처리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6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처리일로부터 30일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기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기본예금구좌와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한 뒤, 모든 구좌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세무등기증서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기록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조사할 경우,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한다. 세무등기증서는 대여, 변조,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된다.  **제2절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19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장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2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세무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과 상충될 경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인쇄,수령,교부, 취득, 보관, 반납폐기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 경영서비스의 제공 또는 접수, 기타 경영활동 중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용, 취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2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국무원세무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업이 인쇄하고 기타 영수증은 국무원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별도로 인쇄제작한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의 지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인쇄발행해서는 안된다.  **제23조** 국가는 조세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무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고 세무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쳐서는 안된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무원재정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에 근거하여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위조, 변조 또는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3절 납세신고**  **제25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세신고하고 납세신고서, 제무회계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원천징수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하거나 대리공제·대리납부신고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편, 전자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기 신고와 송부를 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앞 조항에 정한 신고, 제출사항을 연장처리할 경우, 직전기에 실제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예납하고, 심사비준한 연장기한내에 세액을 정산해야한다.  **제3장 세금징수**  **제28조**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목신설, 징수중단, 과다징수, 미달징수, 사전 징수, 지연징수하거나 세금을 할당해서는 안된다.  농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 세무기관, 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납세자는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1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산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기한내에 세금을 결산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외에, 세금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세금의 日 0.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징수한다.  **제33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각급인민정부, 각급인민정부주관부서, 단위와 개인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정한 감세, 면세 결정은 무효하며, 세무기관은 이를 집행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 징수시, 반드시 납세자에게 완납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발행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가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1)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3)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장부를 비치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5)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6)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체절차와 방법은 국무원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제36조**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조세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부를 명령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 화물을 반환해야 한다. 압류이후에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압류물품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제38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전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기한내에 납세자가 그 과세상품, 화물 그리고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을 양도 또는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납세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용기구에 통지하여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예금을 동결한다.    (2)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한다.    납세자가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조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한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구좌 개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 통지하여 동결한 예금중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조세보전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기관에서 즉시 조세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 또는 결산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보증인이 규정한 기한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토록 명령했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예금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2)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봉인하여 공매 또는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세무기관이외의 단위와 개인은 본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정한 조세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제42조** 세무기관에서 취하는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는 반드시 법적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제43조** 세무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으로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부당하게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률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외에는 세금이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 질권, 유치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위법소득몰수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몰수보다 우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제46조**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당권자와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세금체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세무기관에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리스트를 발행해야 한다.  **제48조** 납세자가 합병 또는 분립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납세자가 분립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분사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체납액수가 비교적 큰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고액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체납자가 만기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태만하거나, 만기도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양도(양수인이 동 상황을 인지)로 국가조세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앞 조항에 근거하여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체납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와 부담해야 할 법률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51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세무기관이 발견 한 경우 즉시 환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확정납부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과다납부사실을 발견했을 경우는 동기 은행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하고, 세무기관은 조사후 즉시 환급해야 한다. 국고로부터 환급하는 경우는 법률 및 행정법규상의 국고관리관련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다.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3조**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조세징수 관리범위’와 ‘세금입고 예산등급’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한다.  회계감사 및 재정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조세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유관기관의 결정과 의견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과 가산금을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입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회신한다.  **제4장 세무조사**  **제54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갖는다.    (1)납세자의 장부, 기장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검사함.    (2)납세자의 생산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을 검사함.    (3)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함.    (4)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함.    (5)역, 부두, 공항, 우편물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함.  (6)현급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금구좌조사서에 근거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구좌를 조사한다. 세무기관이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경우 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5조** 세무기관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과거 납세기간의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 또는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조세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와의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무위법사건을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한편,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60조** 납세자가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규정기한내에 세무등기, 변경 또는 등기취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않거나,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프로그램을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4)은행구좌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기를 훼손 또는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서를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과다계상,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속한다.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 조항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제67조**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항세에 해당한다.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본법 제40조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는 한편,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조세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세금계산서판매를 중단한다.  **제7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구좌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결정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토록 하여 조세일실을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본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의 벌금액이 2천원이하일 경우는 세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세무기관과 사법기관의 세무관련 벌금, 몰수소득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제76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조세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등급을 낮추거나 면직처분한다.  **제7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에 규정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사안을 이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세무기관으로부터 법에 의거하여 세금징수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수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타인의 합법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세무기관, 세무직원이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택과 생필품을 압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세무직원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결탁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1조**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물을 수취 또는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2조**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조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할 경우, 부과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세무직원의 조세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고발, 제보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제보자에 대해 세무직원이 보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 범죄요건에 해당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 또는 적게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합법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3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금을 사전징수, 지연징수 또는 할당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행정감찰기관이 그 시정을 명령하고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4조**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신설, 징수중단 또는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조세법률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 징수해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하지 말아야 하나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한편, 상급기관이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세무직원의 세금 징수 또는 조세위법사건 조사시, 본법 제12조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행정처벌대상인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5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행정처벌을 가할 수 없다.  **제87조** 본법 규정에 의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8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납세과정중 세무기관과 쟁의가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의 납세규정에 따라 세금 및 가산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제공해야 할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조세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으면서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본법 제40조에 정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89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 경지점용세, 부동산취득세, 농업세, 목축세의 징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 및 세관이 대행징수하는 조세의 징수관리는 법률 및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 본법 시행전 반포한 조세법률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 국무원은 본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94조** 본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1992年9月4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七次会议通过；根据1995年2月28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二次会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1年4月2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修订；根据2013年6月29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税务管理  　　第一节 税务登记  　　第二节 帐簿、凭证管理  　　第三节 纳税申报  　　第三章 税款征收  　　第四章 税务检查  　　第五章 法律责任  第六章 附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税收征收管理，规范税收征收和缴纳行为，保障国家税收收入，保护纳税人的合法权益，促进经济和社会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凡依法由税务机关征收的各种税收的征收管理，均适用本法。  **第三条** 税收的开征、停征以及减税、免税、退税、补税，依照法律的规定执行；法律授权国务院规定的，依照国务院制定的行政法规的规定执行。  　　任何机关、单位和个人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擅自作出税收开征、停征以及减税、免税、退税、补税和其他同税收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决定。  **第四条** 法律、行政法规规定负有纳税义务的单位和个人为纳税人。  　　法律、行政法规规定负有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义务的单位和个人为扣缴义务人。  　　纳税人、扣缴义务人必须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缴纳税款、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  **第五条** 国务院税务主管部门主管全国税收征收管理工作。各地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应当按照国务院规定的税收征收管理范围分别进行征收管理。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加强对本行政区域内税收征收管理工作的领导或者协调，支持税务机关依法执行职务，依照法定税率计算税额，依法征收税款。  　　各有关部门和单位应当支持、协助税务机关依法执行职务。  　　税务机关依法执行职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  **第六条** 国家有计划地用现代信息技术装备各级税务机关，加强税收征收管理信息系统的现代化建设，建立、健全税务机关与政府其他管理机关的信息共享制度。  　　纳税人、扣缴义务人和其他有关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如实向税务机关提供与纳税和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信息。  **第七条** 税务机关应当广泛宣传税收法律、行政法规，普及纳税知识，无偿地为纳税人提供纳税咨询服务。  **第八条** 纳税人、扣缴义务人有权向税务机关了解国家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与纳税程序有关的情况。  　　纳税人、扣缴义务人有权要求税务机关为纳税人、扣缴义务人的情况保密。税务机关应当依法为纳税人、扣缴义务人的情况保密。  　　纳税人依法享有申请减税、免税、退税的权利。  　　纳税人、扣缴义务人对税务机关所作出的决定，享有陈述权、申辩权；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请求国家赔偿等权利。  　　纳税人、扣缴义务人有权控告和检举税务机关、税务人员的违法违纪行为。  **第九条** 税务机关应当加强队伍建设，提高税务人员的政治业务素质。  　　税务机关、税务人员必须秉公执法，忠于职守，清正廉洁，礼貌待人，文明服务，尊重和保护纳税人、扣缴义务人的权利，依法接受监督。  　　税务人员不得索贿受贿、徇私舞弊、玩忽职守、不征或者少征应征税款；不得滥用职权多征税款或者故意刁难纳税人和扣缴义务人。  **第十条** 各级税务机关应当建立、健全内部制约和监督管理制度。  　　上级税务机关应当对下级税务机关的执法活动依法进行监督。  　　各级税务机关应当对其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廉洁自律准则的情况进行监督检查。  **第十一条** 税务机关负责征收、管理、稽查、行政复议的人员的职责应当明确，并相互分离、相互制约。  **第十二条** 税务人员征收税款和查处税收违法案件，与纳税人、扣缴义务人或者税收违法案件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十三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检举违反税收法律、行政法规的行为。收到检举的机关和负责查处的机关应当为检举人保密。税务机关应当按照规定对检举人给予奖励。  **第十四条** 本法所称税务机关是指各级税务局、税务分局。税务所和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并向社会公告的税务机构。  **第二章 税务管理**  **第一节 税务登记**  **第十五条** 企业，企业在外地设立的分支机构和从事生产、经营的场所，个体工商户和从事生产、经营的事业单位（以下统称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三十日内，持有关证件，向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应当于收到申报的当日办理登记并发给税务登记证件。  　　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将办理登记注册、核发营业执照的情况，定期向税务机关通报。  　　本条第一款规定以外的纳税人办理税务登记和扣缴义务人办理扣缴税款登记的范围和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六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税务登记内容发生变化的，自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之日起三十日内或者在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办理注销登记之前，持有关证件向税务机关申报办理变更或者注销税务登记。  **第十七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持税务登记证件，在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开立基本存款帐户和其他存款帐户，并将其全部帐号向税务机关报告。  　　银行和其他金融机构应当在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的帐户中登录税务登记证件号码，并在税务登记证件中登录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的帐户帐号。  　　税务机关依法查询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开立帐户的情况时，有关银行和其他金融机构应当予以协助。  **第十八条** 纳税人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使用税务登记证件。税务登记证件不得转借、涂改、损毁、买卖或者伪造。  **第二节 帐簿、凭证管理**  **第十九条** 纳税人、扣缴义务人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的规定设置帐簿，根据合法、有效凭证记帐，进行核算。    **第二章 税务管理**  **第二节 帐簿、凭证管理**  **第二十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的财务、会计制度或者财务、会计处理办法和会计核算软件，应当报送税务机关备案。  　　纳税人、扣缴义务人的财务、会计制度或者财务、会计处理办法与国务院或者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有关税收的规定抵触的，依照国务院或者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有关税收的规定计算应纳税款、代扣代缴和代收代缴税款。  **第二十一条** 税务机关是发票的主管机关，负责发票印制、领购、开具、取得、保管、缴销的管理和监督。  　　单位、个人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经营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应当按照规定开具、使用、取得发票。  　　发票的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二十二条** 增值税专用发票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指定的企业印制；其他发票，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分别由省、自治区、直辖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指定企业印制。  　　未经前款规定的税务机关指定，不得印制发票。  **第二十三条** 国家根据税收征收管理的需要，积极推广使用税控装置。纳税人应当按照规定安装、使用税控装置，不得损毁或者擅自改动税控装置。  **第二十四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扣缴义务人必须按照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保管期限保管帐簿、记帐凭证、完税凭证及其他有关资料。  帐簿、记帐凭证、完税凭证及其他有关资料不得伪造、变造或者擅自损毁。  **第三节 纳税申报**  **第二十五条** 纳税人必须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的申报期限、申报内容如实办理纳税申报，报送纳税申报表、财务会计报表以及税务机关根据实际需要要求纳税人报送的其他纳税资料。  　　扣缴义务人必须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的申报期限、申报内容如实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以及税务机关根据实际需要要求扣缴义务人报送的其他有关资料。  **第二十六条** 纳税人、扣缴义务人可以直接到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或者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也可以按照规定采取邮寄、数据电文或者其他方式办理上述申报、报送事项。  **第二十七条** 纳税人、扣缴义务人不能按期办理纳税申报或者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的，经税务机关核准，可以延期申报。  经核准延期办理前款规定的申报、报送事项的，应当在纳税期内按照上期实际缴纳的税额或者税务机关核定的税额预缴税款，并在核准的延期内办理税款结算。  **第三章 税款征收**  **第二十八条** 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征收税款，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开征、停征、多征、少征、提前征收、延缓征收或者摊派税款。  　　农业税应纳税额按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核定。  **第二十九条** 除税务机关、税务人员以及经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委托的单位和人员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进行税款征收活动。  **第三十条** 扣缴义务人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履行代扣、代收税款的义务。对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负有代扣、代收税款义务的单位和个人，税务机关不得要求其履行代扣、代收税款义务。  　　扣缴义务人依法履行代扣、代收税款义务时，纳税人不得拒绝。纳税人拒绝的，扣缴义务人应当及时报告税务机关处理。  　　税务机关按照规定付给扣缴义务人代扣、代收手续费。  **第三十一条** 纳税人、扣缴义务人按照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的期限，缴纳或者解缴税款。  　　纳税人因有特殊困难，不能按期缴纳税款的，经省、自治区、直辖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批准，可以延期缴纳税款，但是最长不得超过三个月。  **第三十二条** 纳税人未按照规定期限缴纳税款的，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期限解缴税款的，税务机关除责令限期缴纳外，从滞纳税款之日起，按日加收滞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三十三条** 纳税人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减税、免税。  　　地方各级人民政府、各级人民政府主管部门、单位和个人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擅自作出的减税、免税决定无效，税务机关不得执行，并向上级税务机关报告。  **第三十四条** 税务机关征收税款时，必须给纳税人开具完税凭证。扣缴义务人代扣、代收税款时，纳税人要求扣缴义务人开具代扣、代收税款凭证的，扣缴义务人应当开具。  **第三十五条**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有权核定其应纳税额：  　　（一）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可以不设置帐簿的；  　　（二）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应当设置帐簿但未设置的；  　　（三）擅自销毁帐簿或者拒不提供纳税资料的；  　　（四）虽设置帐簿，但帐目混乱或者成本资料、收入凭证、费用凭证残缺不全，难以查帐的；  　　（五）发生纳税义务，未按照规定的期限办理纳税申报，经税务机关责令限期申报，逾期仍不申报的；  　　（六）纳税人申报的计税依据明显偏低，又无正当理由的。  　　税务机关核定应纳税额的具体程序和方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  **第三十六条** 企业或者外国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从事生产、经营的机构、场所与其关联企业之间的业务往来，应当按照独立企业之间的业务往来收取或者支付价款、费用；不按照独立企业之间的业务往来收取或者支付价款、费用，而减少其应纳税的收入或者所得额的，税务机关有权进行合理调整。  **第三十七条** 对未按照规定办理税务登记的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以及临时从事经营的纳税人，由税务机关核定其应纳税额，责令缴纳；不缴纳的，税务机关可以扣押其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商品、货物。扣押后缴纳应纳税款的，税务机关必须立即解除扣押，并归还所扣押的商品、货物；扣押后仍不缴纳应纳税款的，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依法拍卖或者变卖所扣押的商品、货物，以拍卖或者变卖所得抵缴税款。  **第三十八条** 税务机关有根据认为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有逃避纳税义务行为的，可以在规定的纳税期之前，责令限期缴纳应纳税款；在限期内发现纳税人有明显的转移、隐匿其应纳税的商品、货物以及其他财产或者应纳税的收入的迹象的，税务机关可以责成纳税人提供纳税担保。如果纳税人不能提供纳税担保，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税务机关可以采取下列税收保全措施：  　　（一）书面通知纳税人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冻结纳税人的金额相当于应纳税款的存款；  　　（二）扣押、查封纳税人的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  　　纳税人在前款规定的限期内缴纳税款的，税务机关必须立即解除税收保全措施；限期期满仍未缴纳税款的，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税务机关可以书面通知纳税人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冻结的存款中扣缴税款，或者依法拍卖或者变卖所扣押、查封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以拍卖或者变卖所得抵缴税款。  　　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不在税收保全措施的范围之内。  **第三十九条** 纳税人在限期内已缴纳税款，税务机关未立即解除税收保全措施，使纳税人的合法利益遭受损失的，税务机关应当承担赔偿责任。  **第四十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的期限缴纳或者解缴税款，纳税担保人未按照规定的期限缴纳所担保的税款，由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逾期仍未缴纳的，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税务机关可以采取下列强制执行措施：  　　（一）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存款中扣缴税款；  　　（二）扣押、查封、依法拍卖或者变卖其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以拍卖或者变卖所得抵缴税款。  　　税务机关采取强制执行措施时，对前款所列纳税人、扣缴义务人、纳税担保人未缴纳的滞纳金同时强制执行。  　　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不在强制执行措施的范围之内。  **第四十一条** 本法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四十条规定的采取税收保全措施、强制执行措施的权力，不得由法定的税务机关以外的单位和个人行使。  **第四十二条** 税务机关采取税收保全措施和强制执行措施必须依照法定权限和法定程序，不得查封、扣押纳税人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  **第四十三条** 税务机关滥用职权违法采取税收保全措施、强制执行措施，或者采取税收保全措施、强制执行措施不当，使纳税人、扣缴义务人或者纳税担保人的合法权益遭受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第四十四条** 欠缴税款的纳税人或者他的法定代表人需要出境的，应当在出境前向税务机关结清应纳税款、滞纳金或者提供担保。未结清税款、滞纳金，又不提供担保的，税务机关可以通知出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  **第四十五条** 税务机关征收税款，税收优先于无担保债权，法律另有规定的除外；纳税人欠缴的税款发生在纳税人以其财产设定抵押、质押或者纳税人的财产被留置之前的，税收应当先于抵押权、质权、留置权执行。  　　纳税人欠缴税款，同时又被行政机关决定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的，税收优先于罚款、没收违法所得。  　　税务机关应当对纳税人欠缴税款的情况定期予以公告。  **第四十六条** 纳税人有欠税情形而以其财产设定抵押、质押的，应当向抵押权人、质权人说明其欠税情况。抵押权人、质权人可以请求税务机关提供有关的欠税情况。  **第四十七条** 税务机关扣押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时，必须开付收据；查封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时，必须开付清单。  **第四十八条** 纳税人有合并、分立情形的，应当向税务机关报告，并依法缴清税款。纳税人合并时未缴清税款的，应当由合并后的纳税人继续履行未履行的纳税义务；纳税人分立时未缴清税款的，分立后的纳税人对未履行的纳税义务应当承担连带责任。  **第四十九条** 欠缴税款数额较大的纳税人在处分其不动产或者大额资产之前，应当向税务机关报告。  **第五十条** 欠缴税款的纳税人因怠于行使到期债权，或者放弃到期债权，或者无偿转让财产，或者以明显不合理的低价转让财产而受让人知道该情形，对国家税收造成损害的，税务机关可以依照合同法第七十三条、第七十四条的规定行使代位权、撤销权。  　　税务机关依照前款规定行使代位权、撤销权的，不免除欠缴税款的纳税人尚未履行的纳税义务和应承担的法律责任。  **第五十一条** 纳税人超过应纳税额缴纳的税款，税务机关发现后应当立即退还；纳税人自结算缴纳税款之日起三年内发现的，可以向税务机关要求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银行同期存款利息，税务机关及时查实后应当立即退还；涉及从国库中退库的，依照法律、行政法规有关国库管理的规定退还。  **第五十二条** 因税务机关的责任，致使纳税人、扣缴义务人未缴或者少缴税款的，税务机关在三年内可以要求纳税人、扣缴义务人补缴税款，但是不得加收滞纳金。  　　因纳税人、扣缴义务人计算错误等失误，未缴或者少缴税款的，税务机关在三年内可以追征税款、滞纳金；有特殊情况的，追征期可以延长到五年。  　　对偷税、抗税、骗税的，税务机关追征其未缴或者少缴的税款、滞纳金或者所骗取的税款，不受前款规定期限的限制。  **第五十三条** 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应当按照国家规定的税收征收管理范围和税款入库预算级次，将征收的税款缴入国库。  对审计机关、财政机关依法查出的税收违法行为，税务机关应当根据有关机关的决定、意见书，依法将应收的税款、滞纳金按照税款入库预算级次缴入国库，并将结果及时回复有关机关。  **第四章 税务检查**  **第五十四条** 税务机关有权进行下列税务检查：  　　（一）检查纳税人的帐簿、记帐凭证、报表和有关资料，检查扣缴义务人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帐簿、记帐凭证和有关资料；  　　（二）到纳税人的生产、经营场所和货物存放地检查纳税人应纳税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检查扣缴义务人与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经营情况；  　　（三）责成纳税人、扣缴义务人提供与纳税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文件、证明材料和有关资料；  　　（四）询问纳税人、扣缴义务人与纳税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问题和情况；  　　（五）到车站、码头、机场、邮政企业及其分支机构检查纳税人托运、邮寄应纳税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的有关单据、凭证和有关资料；  　　（六）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凭全国统一格式的检查存款帐户许可证明，查询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扣缴义务人在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存款帐户。税务机关在调查税收违法案件时，经设区的市、自治州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可以查询案件涉嫌人员的储蓄存款。税务机关查询所获得的资料，不得用于税收以外的用途。  **第五十五条** 税务机关对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以前纳税期的纳税情况依法进行税务检查时，发现纳税人有逃避纳税义务行为，并有明显的转移、隐匿其应纳税的商品、货物以及其他财产或者应纳税的收入的迹象的，可以按照本法规定的批准权限采取税收保全措施或者强制执行措施。  **第五十六条** 纳税人、扣缴义务人必须接受税务机关依法进行的税务检查，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不得拒绝、隐瞒。  **第五十七条** 税务机关依法进行税务检查时，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调查纳税人、扣缴义务人和其他当事人与纳税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情况，有关单位和个人有义务向税务机关如实提供有关资料及证明材料。  **第五十八条** 税务机关调查税务违法案件时，对与案件有关的情况和资料，可以记录、录音、录像、照相和复制。  **第五十九条** 税务机关派出的人员进行税务检查时，应当出示税务检查证和税务检查通知书，并有责任为被检查人保守秘密；未出示税务检查证和税务检查通知书的，被检查人有权拒绝检查。  **第六十条** 纳税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千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的期限申报办理税务登记、变更或者注销登记的；  　　（二）未按照规定设置、保管帐簿或者保管记帐凭证和有关资料的；  　　（三）未按照规定将财务、会计制度或者财务、会计处理办法和会计核算软件报送税务机关备查的；  　　（四）未按照规定将其全部银行帐号向税务机关报告的；  　　（五）未按照规定安装、使用税控装置，或者损毁或者擅自改动税控装置的。  　　纳税人不办理税务登记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经税务机关提请，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其营业执照。  　　纳税人未按照规定使用税务登记证件，或者转借、涂改、损毁、买卖、伪造税务登记证件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一条** 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设置、保管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帐簿或者保管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记帐凭证及有关资料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千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的罚款。  **第六十二条** 纳税人未按照规定的期限办理纳税申报和报送纳税资料的，或者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的期限向税务机关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和有关资料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千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三条** 纳税人伪造、变造、隐匿、擅自销毁帐簿、记帐凭证，或者在帐簿上多列支出或者不列、少列收入，或者经税务机关通知申报而拒不申报或者进行虚假的纳税申报，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的，是偷税。对纳税人偷税的，由税务机关追缴其不缴或者少缴的税款、滞纳金，并处不缴或者少缴的税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扣缴义务人采取前款所列手段，不缴或者少缴已扣、已收税款，由税务机关追缴其不缴或者少缴的税款、滞纳金，并处不缴或者少缴的税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四条** 纳税人、扣缴义务人编造虚假计税依据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并处五万元以下的罚款。  　　纳税人不进行纳税申报，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的，由税务机关追缴其不缴或者少缴的税款、滞纳金，并处不缴或者少缴的税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罚款。  **第六十五条** 纳税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手段，妨碍税务机关追缴欠缴的税款的，由税务机关追缴欠缴的税款、滞纳金，并处欠缴税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六条** 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由税务机关追缴其骗取的退税款，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对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税务机关可以在规定期间内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  **第六十七条** 以暴力、威胁方法拒不缴纳税款的，是抗税，除由税务机关追缴其拒缴的税款、滞纳金外，依法追究刑事责任。情节轻微，未构成犯罪的，由税务机关追缴其拒缴的税款、滞纳金，并处拒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  **第六十八条** 纳税人、扣缴义务人在规定期限内不缴或者少缴应纳或者应解缴的税款，经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逾期仍未缴纳的，税务机关除依照本法第四十条的规定采取强制执行措施追缴其不缴或者少缴的税款外，可以处不缴或者少缴的税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罚款。  **第六十九条** 扣缴义务人应扣未扣、应收而不收税款的，由税务机关向纳税人追缴税款，对扣缴义务人处应扣未扣、应收未收税款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七十条** 纳税人、扣缴义务人逃避、拒绝或者以其他方式阻挠税务机关检查的，由税务机关责令改正，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一条** 违反本法第二十二条规定，非法印制发票的，由税务机关销毁非法印制的发票，没收违法所得和作案工具，并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二条**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扣缴义务人有本法规定的税收违法行为，拒不接受税务机关处理的，税务机关可以收缴其发票或者停止向其发售发票。  **第七十三条** 纳税人、扣缴义务人的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拒绝接受税务机关依法检查纳税人、扣缴义务人存款帐户，或者拒绝执行税务机关作出的冻结存款或者扣缴税款的决定，或者在接到税务机关的书面通知后帮助纳税人、扣缴义务人转移存款，造成税款流失的，由税务机关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四条** 本法规定的行政处罚，罚款额在二千元以下的，可以由税务所决定。  **第七十五条** 税务机关和司法机关的涉税罚没收入，应当按照税款入库预算级次上缴国库。  **第七十六条** 税务机关违反规定擅自改变税收征收管理范围和税款入库预算级次的，责令限期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第七十七条** 纳税人、扣缴义务人有本法第六十三条、第六十五条、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第七十一条规定的行为涉嫌犯罪的，税务机关应当依法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税务人员徇私舞弊，对依法应当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的不移交，情节严重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八条** 未经税务机关依法委托征收税款的，责令退还收取的财物，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行政处罚；致使他人合法权益受到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九条** 税务机关、税务人员查封、扣押纳税人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的，责令退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条** 税务人员与纳税人、扣缴义务人勾结，唆使或者协助纳税人、扣缴义务人有本法第六十三条、第六十五条、第六十六条规定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一条** 税务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或者索取纳税人、扣缴义务人财物或者谋取其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二条** 税务人员徇私舞弊或者玩忽职守，不征或者少征应征税款，致使国家税收遭受重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税务人员滥用职权，故意刁难纳税人、扣缴义务人的，调离税收工作岗位，并依法给予行政处分。  　　税务人员对控告、检举税收违法违纪行为的纳税人、扣缴义务人以及其他检举人进行打击报复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税务人员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故意高估或者低估农业税计税产量，致使多征或者少征税款，侵犯农民合法权益或者损害国家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三条** 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提前征收、延缓征收或者摊派税款的，由其上级机关或者行政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四条** 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擅自作出税收的开征、停征或者减税、免税、退税、补税以及其他同税收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决定的，除依照本法规定撤销其擅自作出的决定外，补征应征未征税款，退还不应征收而征收的税款，并由上级机关追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行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五条** 税务人员在征收税款或者查处税收违法案件时，未按照本法规定进行回避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六条** 违反税收法律、行政法规应当给予行政处罚的行为，在五年内未被发现的，不再给予行政处罚。  **第八十七条** 未按照本法规定为纳税人、扣缴义务人、检举人保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所在单位或者有关单位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十八条** 纳税人、扣缴义务人、纳税担保人同税务机关在纳税上发生争议时，必须先依照税务机关的纳税决定缴纳或者解缴税款及滞纳金或者提供相应的担保，然后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起诉。  　　当事人对税务机关的处罚决定、强制执行措施或者税收保全措施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起诉。  当事人对税务机关的处罚决定逾期不申请行政复议也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的，作出处罚决定的税务机关可以采取本法第四十条规定的强制执行措施，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六章 附 则**  **第八十九条** 纳税人、扣缴义务人可以委托税务代理人代为办理税务事宜。  **第九十条** 耕地占用税、契税、农业税、牧业税征收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另行制定。  　　关税及海关代征税收的征收管理，依照法律、行政法规的有关规定执行。  **第九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同外国缔结的有关税收的条约、协定同本法有不同规定的，依照条约、协定的规定办理。  **第九十二条** 本法施行前颁布的税收法律与本法有不同规定的，适用本法规定。  **第九十三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细则。  **第九十四条** 本法自2001年5月1日起施行。 |